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계획 재공고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개요

가. 신청분야 : 농·축·수산물 / 전통·가공식품 /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 소비자용품의 범위(①,② 모두 충족)

- ① 소비자가 유통매장(온·오프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 ②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상품

나. 신청자격

- 1) 도내 거주자로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 2)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업체별 대표상품 1개 품목)
 - ※ 단, 공고일 현재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경과된 업체에 한함
- 3) 종사자수 300인 미만 업체
- 4) 원료사용
 - 도내산(농·축산물), 국내산(전통가공식품, 수산물), 일부원료 수입산 인정(공산품)
- 5) 인증취득 : 아래 국가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업체

국가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

- ▶ 농·축·수산물 :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GAP, HACCP, 유기가공식품, GMP, GHP, 무항생제인증 등
 - ▶ 전통·가공식품 : HACCP,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 전통식품인증, LOHAS, 으뜸상품인증, 유기가공식품, GMP, 수산물품질인증, 술품질인증, CE, SQ, 친환경농산물, GHP, GAP, KS 등
 - ▶ 공산품(소비자용품) : KS, 환경마크, Q마크, 성능인증, 으뜸상품인증, GD, KC, CGMP, 우수조달제품 등
- ◆ 예시 외 (품질/성능)인증 보유 시 인증기관 및 인증서류 제출

※ 인증신청 진행중인 업체는 현지실사일까지 취득할 경우에 한해 인정

다. 신청 제한사항

- 1) 식품의 안정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기업
-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폐업 중인 기업
- 4) 최근 1년간 소비자단체로부터 불량상품 생산으로 적발된 기업
- 5) 상품의 안전성 또는 품질에 관한 기업 및 관계자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
- 6)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기업
- 7) 우수상품 선정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기업

2. 공고기간 :

- (1차) 2026. 6. 22.(월) ~ 7. 10.(금)
- (추가공고) 2026. 7. 21.(화) ~ 7. 29.(수)

3. 접수기간 :

- (1차) 2026. 7. 13.(월) ~ 7. 17.(금) ※ 공휴일 포함으로 7.20일까지 접수인정
- (추가접수) 2026. 7. 30.(목) ~ 8. 3.(월)

4. 접 수 처 : 각 시·군 기업지원부서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전주시	기업지원과	281-2051	진안군	농촌활력과	430-8071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454-2675	무주군	산업경제과	320-2350
익산시	경제산업과	859-5743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350-2181
정읍시	미래산업과	539-5664	임실군	경제교통과	640-2463
남원시	기업정책과	620-6645	순창군	경제교통과	650-1324
김제시	투자유치과	540-6195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560-2361
완주군	경제정책과	290-3783	부안군	지역경제과	580-4230

5. 신청방법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방문접수

6. 신청서식 : 전북특별자치도(www.jeonbuk.go.kr) 및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도 홈페이지 ⇒ 전북소식 ⇒ 공고/고시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공고

7. 신청서류

- 가.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신청서
- 나.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신청 소개서
- 다.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 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바. 국가공인 품질인증 인증서 사본(공고문 1쪽 참조)
- 사. '24년, '25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아. '24.12월, '25.12월, '26.6월의 4대 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 ※ 종사자 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각 월 말일 이후 발급된 가입자 명부로 모두 제출 (영농조합의 경우 각 연말 및 현재 조합원 명부)
- 자. 상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본(각종 인증서, 특허출원, 수상경력 등)
 - ※ 최근 5년간(2022~2026) 실적에 한하며 인증 취득 진행중인 경우에는 입증 서류 첨부
- 차. 수출실적 증명서 1부('24년, '25년) ※ 해당업체에 한함
- 카. 대형 유통매장,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입점 및 납품 실적 확인서류
 - ※ 납품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온라인 매장 입점현황 캡처 사진 등
- 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지정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가점)
 - ◆ 순서대로 편철·제출하여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원활한 서류 확인 및 취합을 위해, 모든 제출 서류는 클립 및 철침 사용과 타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순서대로 정리한 후 짐계를 사용해 고정)

8. 선정방법

- 1차 심사(해당 시·군), 2차 서류심사(도), 3차 현지실사(선정관리위원회), 4차 최종선정(선정관리위원회)

9. 추진일정

- 서류심사 : '26. 8월중
- 현지실사 : '26. 9월 ~ 10월
- 최종선정 및 인증서 수여 : '26. 11월 ~ 12월

10. 문의처

- 도 기업애로해소과(063-280-3226), 각 시·군 기업지원 부서

(서식 1)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신청서

신청부문	☐ 농·축·수산물 ☐ 전통·가공식품 ☐ 공산품(소비자용품)					
업 체 명	한 글			대표자	성 명 (HP.)	
	영 문				생년월일	
주 소	본 사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 장				담 당 자 (HP.)	
					이 메 일	
사업자번호				설립연월일		
회사규모	대지 : 평(m ²), 건축 : 평(m ²)			자산총액	백만원	
신청상품명	(대표브랜드 <상품> 1개만 기재)					
경영현황	구 분	'24년도	'25년도	'26년도 (6월 기준)	비 고	
	매 출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 출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총 납부세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 용 인 원	명	명	명		
품질인증			지적재산권 각종 포상			
원료사용	☐ 도내산 ☐ 국내산 ☐ 일부 수입산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재무재표 등 작년 및 제작년 매출 확인 가능 서류 1부 3. 신청상품 소개서 1부(카타로그 등 첨부 가능) 4. 기타 심사관련 자료(공고문의 신청서류 참조)						

(서식 2)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신청 소개서

신청상품명	
제품소개 (제품설명, 성장성, 사업성, 품질관리 등)	
제품의 경쟁력	
제품의 기술력 (생산/연구인프라)	
제품의 주요 거래처 (유통경로)	
제품의 매출계획 (국내/당해 연도)	
「우수상품」 사업 신청사유	
제품사진	※ 신청제품에 대한 이미지(사진) : 별지 작성 가능

(서식 3)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 업체명(대표자) :

○ 법인(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신 청 품 목 :

1. 위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준수 각서를 제출하며, 「우수상품」 지정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브랜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제공 동의서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선정 육성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계획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 제17조제 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관련 자격요건, 신청제한사항 등 조회

③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수출액/매출액, 사업자번호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효력기한까지(제공일로부터 3년간) 보유·이용·제공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
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전북특별
자치도 우수상품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열람·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

☐ 아니요

2026년 월 일

업체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추천서

추천시군 :
신청분야 :

기업명 :
상품명 :

구 분		내 용	적정 여부
신청 자격요건 확인	신청 분야	○ 농축수산물 / 전통가공식품 /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 소비자용품의 범위 ① 소비자가 유통매장(on/off-line)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②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상품	여 / 부
	신청 자격	○ 종사자수 300인 미만 업체, 업체별 대표상품 1품목 - 도내 거주자로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	여 / 부
	인증 취득	○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업체	여 / 부
	원료 사용	○ 농축산물 - 도내(道內)산 ○ 수산물, 전통가공식품 - 국내산 ○ 공산품 - 일부원료 수입산 인정 ※ 현장확인 : 원료수불대장 등 확인 필수	여 / 부
신청 제한사항 확인		○ 신청 제한사항 -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폐업중인 기업 - 최근 1년간 소비자단체로부터 불량상품 생산으로 적발된 업체 - 상품의 안전성 또는 품질에 관한 기업 및 관계자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 -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기업 - 우수상품 선정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기업	여 / 부
현장확인		○ 기업체 공장 위생상태 확인결과 ○ 직원현황 확인결과 (종사자수 : 명) ○ 생산공정 확인결과	여 / 부 여 / 부 여 / 부
시 군 추천의견		상품 경쟁력 및 시장 반응, 기업경영인의 기업관 및 의지, 시설 및 위생환경 등 시군 추천의견 기재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4조 규정 및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계획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으로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